



역량기반 현장중심 교육과정 역량성취도에 관한 지침

규정번호	3-3-36
제정일자	2020.03.01
개정일자	
개정번호	Ver.0
총페이지	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동양미래대학교 역량기반 현장중심 교육과정 역량성취도(이하 “성취도”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량성취도 정의) ① 역량성취도란 대학의 역량기반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의 성취수준이나 학업적 발전의 정도를 의미하며 학생 역량향상도와 달성도를 측정한다.

제3조(주관 및 관리부서) ① 교육혁신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역량성취도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② 센터는 학생별, 학과별, 대학전체로 나누어 역량성취도를 관리·보관한다.

제4조(역량성취도 측정) ① 역량성취도는 학생 역량 향상도와 달성도로 구성되며 학생 역량향상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대학핵심역량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역량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학생역량점수를 산출한다.

② 대학핵심역량진단검사는 대학핵심역량진단도구를 이용하여 시행하며 학생들이 보유한 대학의 핵심역량을 측정하여 역량향상도를 산출한다.

③ 학생역량점수는 역량 전공교과목, 역량 교양교과목 그리고 역량기반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한 역량 점수의 합을 의미하며 학교 또는 학과의 목표 역량에 대한 역량달성도를 측정한다.

제5조(역량인증서) 센터장은 학생이 성취한 핵심역량에 대한 역량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① 인증서의 필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학생의 학과, 학번, 성명 등 학적사항
2. 대학핵심역량진단을 통한 역량향상도
3. 핵심역량, 전공역량에 대한 역량점수 및 목표 달성도
4. 역량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5. 발행일

② 인증서는 학생의 요구에 따라 센터장이 발급한다.

제6조(역량성취도 활용) 역량성취도는 학과와 대학의 교육과정 질 관리 및 교육과정 개선의 기본 자료로 관리하고 활용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교육혁신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